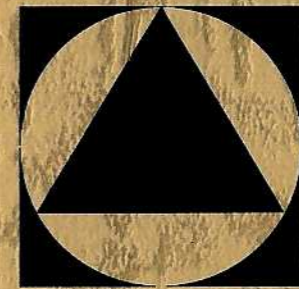


경찰관 인권교육교재

人權의 理解



경찰종합학교

경찰관 인권교육교재

人權의 理解

경찰종합학교

목 차

I. 글머리에	1
II. 인권의 개념	3
1. 인권이란?	3
2. 인권의 특성	4
3. 인권의 유형	5
4. 인권의 역사	7
5.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	8
III. 경찰활동과 인권	11
1. 경찰권 발동의 원칙	11
2. 경찰권 행사의 제한	11
3. 경찰 직무관련 인권 실태	13
4. 인권침해 사례발생 실태분석	23
5. 인권 보호 방안	24
IV. 맺음말	36
<부록>	
인권관련용어 해설	37

인권의 이해

I. 글머리에

인권은 출생과 동시에 지니게 되는 인간 고유의 권리, 즉 천부적(天賦的) 권리로서 국가의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기본 권리와 자유를 말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권리는 민주사회를 구성하는 전제조건으로 우리는 인권 의식의 전환을 통한 실천의 시대에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의 인권 문제는 현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임무를 수행하는 자체가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는 일단 발생하면 원상회복이 어렵고 그 사회적 여파도 아주 크기 때문에 경찰의 권한 행사에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또한 최근 경찰청의 합리적 수사권 조정방안과 관련하여 '견제와 균형, 분권과 자율'이라는 민주 사회의 기본 가치 속에 현재의 수사구조를 민주주의적인 관계로 전환하는 것이 인권보호에 부합할 뿐 아니라 우리 경찰 조직의 인권 의식의 성숙이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위한 초석임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Project 1004'라는 인권 보호 방안으로 '피의자 인권 보장을 위한 수사 환경 개선', '피해자 회복을 위한 지원 활동 강화', '사건관계인 신분 노출 등 2차 인권 침해 방지', '유치장 보호체계를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 등을 추진하여 경찰의 인권 보호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권문제는 세계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보호되어야 하는 보편적인 특성으로 인해 한 국가가 인간을 얼마만큼 존중하느냐를 평가할 수 있는 국제적인 척도가 될 수 있으므로 경찰의 인권 보장과 준수는 이제는 필수적이고 국제적인 현안으로 되어 있으므로 우리 경찰의 인권 보호 노력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모든 권력의 정당성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명심하고 경찰이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기 위해 인권의 일반적 개념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자료를 통한 현 실태를 분석하고 경찰

의 인권 침해 사례와 적용 법령 분석 등을 통해 인권문제에 대한 우리 경찰의 이해를 돕고자 인권옹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찾아보려고 한다.

II. 인권의 개념

1. 인권이란?

인권이란 인간이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절대불가결한 권리로서, 출생과 동시에 지니게 되는 인간 고유의 권리, 즉 천부적(天賦的)인 성격을 지닌다. 인권은 기본권·인권 등으로도 표현되며, 국가의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기본 권리와 자유를 가리키는데, 일반 법률에 규정된 것에 우선한다.

미국의 독립과 프랑스혁명으로 개인의 자유를 지키는 일이 국가의 임무라고 보는 자유 민주주의 사상이 보급되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남에게 물려줄 수 없는 고유한 권리를 지니고 있다. 이것이 자연권(自然權) 또는 인권이다. 국가는 그와 같은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생긴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책무가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권은 국가에 선행하는 것이다.

미국이나 프랑스의 인권선언은 모두가 이와 같은 인권을 선언하고 보장하였다. 인권은 처음에는 전적으로 자유권을 뜻하였다.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서신의 비밀, 주거의 불가침, 재산권의 불가침 등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겨 왔다. 참정권(參政權)은 이에 비하여 인간으로서 가지는 권리가 아니라, 국가의 국민으로서 지니는 권리라고 하여 인권과는 구별되었다.

그러다가, 20세기에 들어 제1·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국민주권이 확립되고, 국가의 임무는 모든 국민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보는 사상(사회국가 사상)이 보급됨과 동시에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권리(참정권)나 국민이 그 생활을 보장받는 권리(사회권)도 다같이 인권 속에 포함하게 되었다. 1948년 12월 10일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 인권선언' 제1조에서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 인간은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자매)의 정신으로 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한민국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인권을 명시하고 있으며, 대한민국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는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

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고 폭넓게 정의하고 있다.

즉, ‘인권 (Human Rights)’은 ‘인간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는 권리’를 말하며 ‘인신과 생명을 지킬 권리’, ‘고문 받지 않을 권리’, ‘노예상태에 있지 않을 권리’ 등은 보편적 인권 중에서도 가장 본질적인 내용이며 어떤 경우에도 침해할 수 없는 권리이다.

2. 인권의 특성

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구체화

과거에는 인권을 인정하는 근거로 신이나 자연법을 들었으나 오늘날에는 인권의 존엄의 구체화가 인권이라고 할 수 있다. 인권존중은 민주사회의 요체로 인권은 국가의 절대적인 권한 행사에 제한을 가하며 이러한 인권존중 사상이 완전히 준수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인권의 대의명분에는 모든 국가가 동의하고 있다.

나. 前 국가적 자연권성

기본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민주주의와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 것 인권이 없는 민주주의는 생각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인권은 국가 이전의 권리이며 국가가 이를 확인하고 보장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이다.

다. 권리들 간의 충돌과 제한

개인의 인권을 제한 없이 인정할 경우에 이해관계당사자간의 권리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전체 사회의 민주적 요구를 반영하되 약자의 권리보호를 우선으로 하며 ‘나’의 권리를 위해 ‘타인’의 권리를 해쳐서는 안 되며 권리와 권리가 상충될 때의 판단기준과 주체의 역할은 헌법, 사법부, 그리고 약자의 권리 해석과 지지, 시정에 관해서 중요한 국가 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기구가 담당한다.

3. 인권의 유형

보통 국제인권장전의 중심적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세 문서는 유엔이 1948년 채택한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UDHR), 1968년 채택된 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ICESCR 사회권규약으로 약칭), 그리고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자유권규약으로 약칭)인데 이 세문서는 인권을 경제적 권리, 사회적 권리, 문화적 권리, 시민적 권리, 정치적 권리로 분류하고 있다.

가. 경제적 권리

- 적절한 생활수준을 획득하고 유지할 권리-배고픔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사회권규약 제11조 제2항), 적절한 식량·의복·주거를 포함하는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사회권규약 제11조 제1항)
- 노동권(사회권규약 제6조)
-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에 대한 권리(사회권규약 제7조)
- 노동조합을 형성하고 가입할 권리, 파업할 권리(사회권 제8조)

나. 사회적 권리

-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사회권규약 제9조)
- 가족·임산부·아동의 권리(사회권규약 제10조), 가족에 대한 보호·혼인의 자유(자유권규약 제23조), 아동의 권리(자유권규약 제24조)
- 육체적·정신적 건강에 대한 권리(사회권규약 제12조)

다. 문화적 권리

- 교육권(사회권규약 제13조), 기초 의무교육에 대한 권리(사회권규약 제14조)
- 문화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와 자유로운 과학적 진보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사회권규약 제15조)

- 소수자의 권리(자유권규약 제27조)

라. 시민적 권리

-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자유권규약 제16조),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자유권규약 제26조)
- 재소자의 권리·생명권(자유권규약 제26조), 고문금지(자유권규약 제7조), 처벌제도의 기본적 원칙(자유권규약 제10조)
- 공정한 재판에 대한 권리·재판 앞에 평등과 무죄추정의 원칙(자유권규약 제14조), 계약상 의무의 불능만을 이유로 구금금지(자유권규약 제11조)
- 이동의 자유에 대한 권리(자유권규약 제12조)
-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개인적 영역(사생활)의 자유에 대한 보호(자유권규약 제17조),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자유권규약 제19조), 전쟁과 차별에 대한 선전 금지(자유권규약 제20조)

마. 정치적 권리

-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자유권규약 제21조)
- 결사의 자유(자유권규약 제22조)
- 정치에 참여할 권리(자유권규약 제25조)
이상에서 나열한 인권은 인간 존엄성의 최소 조건을 국제법적으로 규정 한 것이다.

바. 기타 권리

최근에는 개인이 아닌 집단의 권리 즉, 소수자·난민·이주노동자·국민의 자기결정권 등 '집단적 권리 (collective rights)'를 인정하기도 한다. 또한 국제법으로 정착되지 않았지만 국제사회에서 인정하기 시작한 지향적인 권리인 '제3세계 민중의 발전권', '토착 원주민의 권리' 등이 있으며 이를 '선언적 권리 (declaratory rights)'라고 한다.

4. 인권의 역사

가. 자연권으로서의 인권의식이 싹튼 시기

고대의 그리스 로마시대에도 자유민과 일부 귀족을 중심으로 인권의 개념이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나, 현대적 개념의 인권개념은 민주주의 사상의 선구자인 영국에서 출발하였다. 13세기 마그나 카르타¹⁾, 17세기 인신보호령²⁾, 명예혁명과 권리장전³⁾, 존 로크의 자연권과 저항권 이론 등이 형성되면서 중세를 거치면서 인권은 국가의 전제권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자연권의 일종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나. 전통과 인습에서 벗어나 인간의 고귀함을 확인하는 시기

18세기 미국 독립혁명과 프랑스혁명에서 인간의 존귀함이 발견되고 휴머니즘과 계몽주의는 인권의 모태가 되었다.

다. 1,2차 세계대전과 대대적인 인권유린기

19세기에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흑인노예 해방, 여성의 권리향상, 전

- 1) 1215년 영국왕 존이 귀족들의 강압에 따라 승인한 칙허장(勅許狀)으로 존의 실정(失政)에 견디지 못한 귀족들이 런던 시민의 지지를 얻어 왕과 대결, 템스 강변의 러니미드에서 왕에게 승인하도록 한 귀족 조항을 기초로 작성되었다. 원문에는 개조번호(個條番號)가 없으나 18세기 이래 63개조로 정리되어 있다. 새로운 요구를 내놓은 것은 없고 구래(舊來)의 관습적인 모든 권리를 확인한 문서로서 교회의 자유, 봉건적 부담의 제한, 재판 및 법률, 도시특권의 확인, 지방관리의 직권남용 방지, 사냥, 당면한 애로사항의 처리 등 여러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본래는 귀족의 권리를 재확인한 봉건적 문서였으나, 17세기에 이르러 왕권과 의회의 대립에서 왕의 전제(專制)에 대하여 국민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최대의 전거(典據)로서 이용되었다. 특히 일반 평민의 승인 없이 군역대납금(軍役代納金)·공과금을 부과하지 못한다고 정한 제12조는 의회의 승인 없이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의 근거로서, 또 자유인은 같은 신분을 가진 사람에 의한 재판이나 국법에 의하지 않으면 체포·감금할 수 없다고 정한 제39조는 보통법재판소에서의 재판요구의 근거로서 크게 이용되었다.
- 2) 1628년 영국 의회가 의회의 과세 승인권, 불법 인신 구속 금지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권리청원' 제출 이후 1679년 선포된 것으로 자의적 인신 구속을 금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 3) 1688년 영국에서 일어난 시민혁명으로 윌리엄 3세를 추대하면서 권리선언(權利宣言)을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았고, 이 선언을 토대로 89년 12월 16일 '신민(臣民)의 권리와 자유를 선언하고 왕위계승을 정하는 법률'이라는 이름의 의회제정법이 공포되었는데, 이것이 곧 권리장전이다. 권리장전의 주요내용 의회의 동의 없이 왕권에 의하여 이루어진 법률이나 그 집행 및 과세의 위법, 의회의 동의 없이 평화시에 상비군의 징집 및 유지의 금지, 국민의 자유로운 청원권의 보장, 의원선거의 자유 보장, 의회에서의 언론 자유의 보장, 지나친 보석금이나 벌금 및 형벌의 금지 등이었다.

시에 사람들을 인도적으로 처우하자는 움직임이 형성되었다. 20세기에는 제 1, 2차 세계대전으로 엄청난 규모의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였는 바, 한국에서는 일제치하의 창씨개명, 강제징집, 중군위안부의 학대, 생체실험등과 같은 인권유린이, 유럽에서는 나치 독일에 의한 유대인의 학살 등 사상 유래 없는 집단학살과 인권유린이 발생하였다.

라. 반인도적 범죄 처벌의 제도화 시기

전쟁 후 뉘른베르크 전범재판, 동경 전범재판 등을 실시되었고 '반인도적 범죄'라는 개념의 등장으로 유엔에 의하여 주도된 인권 보호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형성되었는데 비인도적인 인권유린은 비록 전쟁 중이라도 저질러서는 안 되는 범죄행로 규정하였다.

마. 전후 인권 운동 시기

세계인권선언⁴⁾ 발표: 모두들 받아들일 수 있는 보편적 인권개념을 선포하고 인권 NGO의 국제 연대활동과 인권의 공식 의제화 되어 국제앰네스티와 같은 단체들이 인권의 이행을 감시하고 새로운 의제를 제기하고 공식 통로를 통한 의제도 대폭 증가하였으며 전 세계 국가간 관계에서 필수 고려사항으로 자리한 인권의 의미이다. 따라서 인권외교 정책은 전 세계 국가간 관계에서 인권을 필수적인 고려사항으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고 인권은 국제질서에서 중요한 요소이며, 인류보편의 문제이다.

5.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

가. 인권보호를 위한 유엔의 역할

국제인권장전을 통해 인권을 강제하거나 권유하며 그 외에 집단학살 방

4) 1946년 유엔인권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1948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이 표결 (찬성 48, 반대 0, 기권 8)로 통과되었으며 전문과 3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정치경제문화종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보편적 인권 개념', '모든 사람, 모든 국가가 달성해야 하는 인권의 공통기준'을 세계에 선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지협약, 고문방지협약, 인종차별 철폐협약, 여성차별 철폐 협약 등 다양한 국제법을 제정하고 OHCHR 산하 유엔인권위원회에서 국제인권법 제정과 인권기준 등을 개발하고 있다.

나. 인권 NGO의 활동⁵⁾

각국 정부의 인권이행 감시(monitoring), 인권의제 주창 (advocacy), 인권 문제에 대한 좋은 해결책 제시 (innovation), 인권보호 활동을 직접 제공 (provision) 등을 담당하고 있다.

다.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인권보호와 신장을 위한 자문으로 의견·권고·제안·보고서 제출과 발표 등을 하며 인권의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 지원과 대중적 인식 확산을 위한 노력을 통해 유엔 및 유엔 관련 기관, 지역기구, 다른 나라의 국가인권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각 나라의 인권보호 의지, 성실한 의무이행을 보여주는 지표가 되는 개별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조사와 구제 등을 담당한다.

라. 우리나라의 '국가 인권 위원회'

(1) 법적 근거

헌법 제19조 2호에 의거, 인권 침해에 대한 조사와 구제를 담당하며 조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1항 1호에 의해 구성하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급·보호 시설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헌법 10조 내지 제 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조사할 수 있으며 국가 인권위원회 법 제 34조 제1항에 의해 진정의 원인이 된 사건이 범죄에 해당한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의 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의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원회

5) 대표적 국제인권 NGO (괄호안은 창설 연도)는 국제종교자유협회 (1893), 국제 앰네스티 (1961), 국경 없는 의사회 (1971), 인권법률가협회 (1978), 휴먼라이츠워치 (1978), 집단학살연구소 (1982), 인권 의사회 (1986) 등이 있다.

는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2) 주요 기능

(가) 정책적 기능

인권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연구 및 개선권고·의견표명을 할 수 있고 인권침해의 유형·판단기준과 예방조치 등에 관한 지침 제시·권고하는 한편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조약의 이행에 관한 권고·의견 표명도 할 수 있다.

(나) 조사·구제 기능

국가기관, 지자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인권침해 및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에 의한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 등을 조사·구제할 수 있다.

(다) 교육·홍보 및 국내외 협력 기능

국민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홍보와 인권상황 실태 조사를 하며 국내 인권단체 및 개인과 협력과 인권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 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 업무를 한다.

Ⅲ. 경찰활동과 인권

1. 경찰권발동의 원칙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제1조)는 헌법의 조항은 모든 국가 권력의 정당성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민주 국가임을 천명하고 민주국가는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또는 자신의 의사를 대표하는 의회를 통하여 제정한 법률로 국민을 통제한다는 이른바 ‘법의 지배’를 추구하므로 경찰의 권한은 무제한적으로 행사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하여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2. 경찰권 행사의 제한

가. 법익균형성의 원칙 (법익형량의 원칙)

기본권제한이 여러 원칙들에 적합한 경우에도 유용성과 손실을 비교 양자간 합리적 균형관계를 이루어야 한다. 입법자는 공익실현을 위하여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입법 목적을 실현하기에 적합한 여러 수단 중에서 되도록 국민의 기본권을 가장 존중하고 기본권을 최소로 침해하는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

나. 이중기준의 원칙

이중 기준론은 기본권 중에서 정신적 자유권과 경제적 자유권을 구별하여 전자의 가치는 후자의 가치에 우월 하는 것이므로 양자에 대한 제한방법 내지 제한 기준도 달라져야 한다는 이론이다. 정신적 자유권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지 아니하며 예외적으로 제한되는 경우에도 그 제한 입법의 합헌성의 판단은 경제적 기본권의 그것보다 엄격해야 한다는 논리가 이중기준의 원칙이다.

예컨대 표현의 자유의 제한에 관해서는

㉠ 사전억제의 금지 ㉡ 제한의 사유와 제한의 정도에 대한 명확성 ㉢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성 ㉣ 합리성 등과 같은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필요가 있지만, 경제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가능하다.

다.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금지

헌법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헌법 제37조 후단)고 규정하고 있다. 본질적인 내용이라 함은 당해 기본권의 핵이 되고 있는 실체를 말하고,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라 함은 그 침해로 말미암아 당해 자유와 권리가 유명무실한 것이 되어 버리는 정도의 침해를 말한다. 양심의 작용을 권리의 내용으로 하는 기본권인 경우에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도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우리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우리나라 기본권질서의 이념적, 정신적 출발점인 동시에 모든 기본권의 가치적인 핵심으로써 성격을 갖으며 우리나라 헌법질서의 바탕이며 우리헌법질서에서 절대적으로 양보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를 뜻하게 된다.

라. 보충성의 원칙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에 제한할 수 있지만, 기본권 제한 요건인 국가안보, 질서유지, 공공복리는 불확정 개념이므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기본권보장의 핵심인 본질적인 부분의 제한은 위헌이다.

3. 경찰 직무 관련 인권 실태

가. 국가인권위원회

(1) 2004년도 인권 침해 현황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에 국가기관의 인권침해와 관련해 접수된 상담은 경찰과 검찰 관련 건수가 전체의 57%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인권위 인권 상담센터가 발간한 '2004 인권상담 사례집'에 따르면 올해 국가기관 인권침해의 경우 경찰과 관련한 것이 1164건으로 전체(2805건)의 41.5%를 차지했다.

검찰도 전체의 15.7%인 440건에 달했고, 중앙행정기관과 정부출연기관 등 기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각각 15.0%, 6.2%로 뒤를 이었으며 특히 경찰은 상담센터가 업무를 시작한 2000년 39.3%를 비롯해 2001년 47.9%, 2003년 38.3%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수사기관의 인권침해와 관련한 상담은 '편파', '불공정 수사'에 관한 내용이 가장 많았고 폭행, 가혹행위, 과도한 총기와 장구 사용, 욕설 등이 뒤를 이었고 차별행위와 관련된 상담은 국가기관의 평등권 침해와 관련한 경우가 전체의 53.7%로 법인·단체·개인에 의한 차별사례(37.3%)보다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국가기관의 차별사례는 계속해서 감소한 반면 법인·단체·개인(2001년 29.4%, 2003년 41.8%)과 교육기관(2002년 5.0%, 2003년 11.4%)에 의한 차별상담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 국가기관의 차별상담 사유별로는 경찰, 검찰, 지자체 등 국가기관에 의한 부당한 불기소 처분, 구급·보호시설 내 부당처우 등의 차별이 54.8%로 가장 많았고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13.1%) ▲장애에 의한 차별(7.2%) ▲출신 국가에 의한 차별(7.2%) 등의 순이었다.

(1) 진정 접수 및 상담·안내현황 ('01. 11. 26 - '05. 4. 30)⁶⁾

	진 정						상 담				안 내				총계		
	방문	면전	전화	우편팩스	인터넷	계	방문	면전	전화	인터넷	계	방문	전화	우편팩스		인터넷	계
'01	247	5	203	310	38	803	121	3	224	-	348	129	1,713	10	-	1,852	3,003
'02	445	553	177	1,442	173	2,790	468	302	1,891	-	2,661	686	6,357	299	216	7,558	13,009
'03	555	1,129	76	1,760	295	3,815	890	878	3,487	6	5,261	592	7,930	621	1,197	10,340	19,416
'04	1,670	1,274	122	1,844	458	5,368	856	1,346	3,798	57	6,057	481	7,971	1,030	2,943	12,425	23,850
'05.1	39	76	5	154	91	365	60	88	371	6	525	30	700	117	330	1,177	2,067
2	24	59	10	156	56	305	49	66	355	4	474	25	507	66	419	1,017	1,796
3	67	138	12	189	118	524	89	177	629	3	898	72	846	103	762	1,783	3,205
4	50	87	12	177	134	460	78	96	655	7	836	51	821	99	702	1,673	2,969
총누계	3,097	3,321	617	6,032	1,363	14,430	2,611	2,956	11,410	83	17,060	2,066	26,845	2,345	6,569	37,825	69,315

6) <http://www.humanrights.go.kr/information/internal>

(2) 진정사건 유형별 통계⁷⁾

단위 : 건

진정사건 14,430건(100.0%)						
인권침해 11,803(81.8)		차별행위 1,190(8.2)			기타 1,437(10.0)	
계	11,803(100.0)	계		1,190(100.0)	계	1,437(100.0)
		공	사			
검찰	716(6.1)	장애	80	58	사인간침해	235(16.4)
경찰	2,522(21.4)	병력	10	28	회사	96(6.7)
국정원	51(0.4)	사회적신분	170	65	기타단체	19(1.3)
특별사법경찰관리	97(0.8)	출신지역	14	5	재산권	61(4.2)
지자체	313(2.7)	출신국가	28	26	법령제도	422(29.4)
사법기관	163(1.4)	출신민족	0	1	입법제관	114(7.9)
입법기관	11(0.1)	인종	0	1	기타진정	490(34.1)
기타국가기관	2,168(18.4)	피부색	1	1		
구급시설	5,221(44.2)	성별	36	53		
다수인보호시설	276(2.3)	혼인여부	8	6		
군검찰	10(0.1)	임신출산	2	18		
군헌병	53(0.4)	가족상황	2	6		
기무사	14(0.1)	성적지향	4	4		
군구급시설	20(0.2)	나이	67	54		
기타군사	168(1.4)	용모등신체조건	23	6		
		종교	4	18		
		사상,정치적의견	4	8		
		전과	17	3		
		학력학벌	23	33		
		기타사유	220	83		

7) <http://www.humanrights.go.kr/information/internal>

(3) 인권 침해사건 처리 현황⁸⁾

단위 : 건

구분	처리 유형										
	소계	고발, 수사 의뢰	법률구조요청	징계 권고	권고	긴급구제	합의종결	기각	각하	이송	조사 중지
사건수	9,434	18	4	21	144	4	77	2,133	6,690	290	53
2004년	4,932	6	4	2	79	-	54	1,280	3,306	148	53
2003년	3,137	9	-	3	57	2	23	717	2,210	116	-
2002년 이전	1,365	3	-	16	8	2	-	136	1,174	26	-

(4) 대상기관별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⁹⁾

2001. 11. 25 - 2004. 12. 31까지

구분	접수	사건 종결										
		소계	고발, 수사 의뢰	징계 권고	긴급구제	권고	법률구조	기각	이송	각하	합의종결	조사 중지
계	10,501	9,434	18	21	4	144	4	2,133	290	6,990	77	53
%		100.0	0.2	0.2	0.0	1.5	0.0	22.6	3.1	70.9	0.8	0.6
경찰	2,229	1,973	7	18	2	39	-	512	32	1,290	58	15
검찰	637	575	2	-	2	6	-	112	6	444	-	3
구급	4,634	4,205	2	2	-	68	4	1,208	246	2,640	7	28
보호	217	162	3	-	-	2	-	58	3	90	3	3
군대	243	198	1	-	-	3	-	18	-	175	-	1
기타 국가기관	2,541	2,321	3	-	-	26	-	225	3	2,051	9	3

8) 연간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p. 94.

9) 전계서 p. 94.

(5) 경찰 관련 주요 조치 내역¹⁰⁾

조치 유형	사건명	조치 내용	의결일자	이행현황
수사의뢰	긴급체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진정인을 긴급체포하는 과정에서 수갑을 채운 상태로 진정인의 얼굴을 구타한 피진정인에 대해 수사 의뢰	2004. 1. 26	무혐의 처분
인권 교육	수사권 남용에 의한 인권 침해	수배해제를 지연한 피진정인에 대해 자체인권 교육 수강 권고	2004. 2. 11	수용
고발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에 의한 인권 침해	참고인 조사과정중 야구 방망이 등으로 구타한 피진정인 고발	2004. 2. 23	불구속 기소
고발	집회 참여 방해 및 불법 감금	집회참여를 방해할 목적으로 진정인을 차에 태워 4-5시간 감금한 피진정인 고발	2004. 2. 23	불기소 처분 → 재정신청 (2004. 5. 28) → 기각
경고	변호인 접견 및 불법 감금	변호인 접견 내용을 청취, 기록한 피진정인 징계 및 부서책임자에 대한 서면 경고	2004. 3. 31	수용
인권 교육	적법 절차 위반에 관한 인권 침해	체포 및 구속 사실 통보를 지연한 피진정인에 대해 경고 조치 및 서면 경고 권고	2004. 3. 31	수용
인권 교육	적법절차 위반	밀실 조사한 피진정인에게 주의 조치 및 직원 교육 실시 권고	2004. 4. 3	수용
인권 교육	신체의 자유 침해	긴급체포 요건을 결여한 피진정인에게 인권교육 수강 권고	2004. 4. 2	수용 거부
인권 교육	미란다원칙 미고지	미란다원칙 고지 없이 구인장을 집행한 피진정인에게 자체 인권교육 실시 권고	2004. 4. 30	수용
인권 교육 등	구속전 피의자 심문 신청권 침해	피의자 의사와 달리 구속영장신청서에 심문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잘못 기재하여 영장실결심사기회를 박탈한 피진정인에 대해 인권 교육 실시 및 사례 전파 등 재발 방지 권고	2004. 4. 30	수용
인권 교육 등	불심검문 절차 미준수에 의한 인권 침해	소속, 성명을 밝히지 않고 불심검문을 실시한 피진정인에 대해 불심검문관련 위원회 제시자료 소감문 제출, 소속기관에는 정기적인 자체 인권 교육 실시 권고	2004. 6. 4	수용

10) 전계서, pp. 96-97.

인권 교육	부당 수사	조사과정에서 폭언 및 밤샘조사를 행한 피진정인에 대해 주의 및 수사경찰관들에 대한 자체 인권 교육 실시 권고	2004. 6. 9	수용
인권 교육	위법한 불심 검문	일선경찰관이 불심검문의 요건을 정확히 인지하고 불심검문 절차를 준수하여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기관 자체 인권 교육 실시 권고	2004. 6. 9	수용
인권 교육	강제 지문 채취	진정인의 지문을 영장 없이 강제로 채취한 피진정인에 대해 인권 교육 실시 권고	2004. 6. 28	수용
권고	부당 면회 금지	피해자의 면회요청을 부당하게 금지한 행위에 대해 범죄수사규칙,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 등 관련 규정 개정 권고, 서대문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한 주의 조치 및 직원 교육 실시 권고	2004. 8. 9	수용
경고 등	장애 청소년 보호조치 미흡	정신지체 장애인 피의자 수사과정에서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피진정인들에 대해 경고 주의조치 및 자체 직원교육 실시 권고	2004. 10. 11	수용
권고	경찰서 유치장 관련	유치장 수용자에게 침구류 및 세면도구 등 기초적인 생활용품을 지급하도록 할 것 권고	2004. 11. 18	검토중
권고	적법 절차 위반에 의한 인권 침해	체포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면회를 제한한 피진정인에 대해 경고조치 및 소속 직원들 자체 인권 교육 실시 권고	2004. 11. 18	수용

나. 경찰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주요 결정사항

(1) 알몸 신체 수색 및 연속 수사

인권위는 2005. 2. 2 '휴식과 수면을 취하지 못한 채 26시간 이상 계속 조사를 받았고, 알몸 신체수색 중에 인격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2004년 4월 A 씨(26세, 남자)가 ○○ 경찰서 경찰관을 상대로 낸 진정사건에 대해 인권위는 2일 해당 경찰서장에게 담당 경찰관에 대한 경고조치와 더

불어 경찰청장에게도 알몸 신체수색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규정 마련을 권고하였다.

인권위는 A 씨의 진정을 접수 받고 조사한 결과 5시간에 걸쳐 뒷수갑을 찬 상태로 부산으로 호송된 이후 약 26시간 동안 별다른 휴식이나 수면을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조사를 받았던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인권위는 적정한 휴식과 수면을 취하게 하지 않고 야간수사까지 실시한 것은 '범죄 수사 규칙'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에서 연유한 휴식권과 수면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규정하였다.

이와 관련 경찰관(피진정인)은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것과 서울에서 체포한 A 씨를 ○○으로 호송하는 과정에서 걸린 시간 및 공범과의 대질조사 등을 이유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호소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경찰관의 주장에 대해 인권위는 A 씨의 유치장 입·출감 기록을 확인한 결과 낮에는 조사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돼 '피진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또한 인권위는 해당 경찰관이 A 씨의 알몸 신체수색을 할 당시 직원 숙직실에서 속옷을 포함해 상·하의를 모두 벗게 한 것과 욕을 한 점 등도 인권침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알몸 신체수색을 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수치심을 포함한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어야 하고 외부인이 출입할 가능성이 높은 장소에서 이뤄진 것 등을 종합해 볼 때 헌법 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러한 알몸 신체수색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만큼 유사한 인권침해가 유발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인권위는 재발 방지를 위해 경찰청장에게 알몸 신체수색과 관련한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2) ○○ 경찰서 교통사고 현장확보 사진 미확보 (2005. 1. 26)

인권위는 경찰이 교통사고 현장사진을 촬영하지 않는 등 현장증거 확보에 소홀한 것도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인권위는 "지난 2003년 11월 ○○ 경찰서 경찰관들이 교통사고 초동조

사 때 현장사진을 찍고 스프레이로 표시해달라는 요구를 무시했다"면서 A씨가 제기한 진정에 대해 교통사고 현장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것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 경찰서장에게는 해당 경찰관들에 대해 경고 조치를, 경찰청장에게는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과 제도 개선을 권고하였다.

(3) ○○ 경찰서 피의자 면회 금지 (2004. 8. 23)

인권위는 2003년 3월 S모(36)씨가 서울 ○○ 경찰서 ○ 경위 등이 자신과 동료를 긴급체포해 조사하면서 가족 등의 면회를 부당하게 방해했다고 진정한 사건에 대해 경찰청장에게 관련 수사규칙 등을 개정하라고 권고하였다.

인권위에 따르면 ○ 경위 등은 당시 소속기관 책임자에 대한 보고나 승인절차 없이 유치장 담당자에게 구두상으로 심씨 면회 금지를 부탁했고, 유치장 담당자는 이에 따라 심씨 가족 등에게 구체적 이유 등을 설명하지 않은 채 세 차례나 면회를 허락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이날 '비록 면회 금지 이유가 정당했다 해도 이는 형사소송법과 범죄수사 규칙 등을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관련 규정이 미비해 수사 담당자들이 임의로 업무 관행에 따라 면회를 금지한 것은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경찰청장은 피의자 면회 금지시 수사 담당자가 소속 기관장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관련 범죄수사 규칙을 개정하고 ○○ 경찰서장은 피진정인에게 주의를 주고 직원들에게 관련 규정 준수를 교육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4) ○○ 경찰서 인격권 침해사례 (2003. 11. 12)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혐의로 체포돼 경찰에 호송되는 과정에서 폭언을 듣고 폭행을 당했다'며 K씨(45)가 2003년 1월 ○○ 경찰서 ○○ 순경 등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의자 호송과정에서 폭언을 한 경찰관에게 특별인권교육을 시킬 것을 경찰서장에게 권

고하였다.

국가인권위는 조사과정에서 경찰관이 '5회에 걸쳐 진정인에게 폭언을 했다'고 시인함에 따라, 특별인권교육을 권고하게 되었으나 진정인이 경찰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진정인의 주장과 달리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진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어 기각하였다.

국가인권위는 피진정인의 폭언 행위에 대해 △진정인이 취중이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욕설이 필요불가결한 상황으로 보이지 않고 △15세 연상인 진정인에게 폭언을 퍼부은 것은, 사회상규상 용인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했으며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피진정인의 행위가 헌법 제10조(인격권)를 침해하고,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4조(예절)에 정한 국민에 대한 친절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재발방지 차원에서 특별인권교육 수장을 권고하였다.

(5) ○○ 경찰서 가혹행위 사례 (2003. 10. 3)

국가인권위원회는 신용카드 절도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구타, 욕설,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K씨(23)가 2002년 6월 ○○ 경찰서 경찰관들을 상대로 낸 진정사건을 조사한 뒤, 경찰관들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였다.

진정인은 당초 찜질방에서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혐의로 공모자들과 함께 긴급 체포됐고, 경찰관들이 진정인이 끼고 있던 반지의 출처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반지의 절도 사실을 추가로 자백했고, 경찰관들이 자백과정에서 손과 나무 빗자루 등으로 구타하고, 얼굴에 침을 뱉고, 팔과 다리를 포승으로 묶은 채 얼굴에 3차례 물을 붓는 등의 가혹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관들은 진정인의 이 같은 주장을 전면 부정하였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진정인이 건강한 상태에서 체포됐고 체포 및 조사과정에서 도주를 시도하거나 반항·자해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경찰관들로부터 조사를 받고 유치장에 입감된 직후부터 타박상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며, 식사를 하지 못한 채 누워 있었던 점, 경찰관들이 진정인을 강력반 사무실이 아닌 별도의 폐쇄된 사무실에서 단독으로 조사한 점, 참고인들이 '진정인이 단독으로 조사를 받고 나온 직후 머리카

락과 상의가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진정인이 단독으로 조사를 받고 있던 사무실에서, 경찰관이 양동이의 수건을 들고 나오는 것을 보았다', '조사 직후 진정인의 손목 부위에 빨갱게 묶인 흔적이 있었다'는 등의 목격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경찰관들이 반지의 출처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에게 구타와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피진정인들의 행위가 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며, 형법 제125조(폭행, 가혹행위)의 범죄행위를 구성할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판단돼, 경찰관들을 검찰총장에 수사의뢰하기로 결정

(6) ○○ 수사본부 가혹행위 사례 (2003. 9. 15)

2002년 9월 ○○ 수사본부의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가혹행위사건과 관련, 국가인권위는 수사본부의 수사감독관을 포함한 관련 형사 7명을 검찰총장에 수사의뢰하기로 2003년 9월 15일 결정하였다.

이 사건은 ○○ 인권단체가 2003년 2월 수사본부장 등 10명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비롯됐으며 진정 요지는 △2003년 1월 15일 01:45경 피해자 J씨(남·22세)가 절도혐의로 체포돼 ○○ 경찰서 수사과 형사계 사무실(수사본부)에서 밤샘조사 등 가혹행위를 당하는 과정에서, 동료 피해자 P 모씨(남·21세) 및 K 모씨(남·21세) 등과 공동으로 2002년 9월 20일 00:30경 ○○ 파출소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을 살해 하고 경찰관이 소지하고 있던 권총 1정을 탈취했다고 허위자백을 했고, 수사본부의 수사감독관 및 담당형사들은 이들의 자백을 근거로 P 모씨를 긴급 체포해, ○○ 경찰서 4층의 체력단력실 사무실 등에서 조사하면서 구타·기합·밤샘조사 등 가혹행위를 했고, 관할 헌병대와 공조수사를 진행하던 담당형사들도 K모씨(군복무 중)에게 자백을 강요 했다는 내용이었다.

국가인권위 조사과정에서 피진정인들은 피해자들에 대한 가혹행위 사실을 전면 부인했으나 국가인권위는 수사본부의 수사기록, 피해자들의 ○○ 경찰서 유치장 수용기록, 피해자 J 씨의 ○○교도소 현인서(신체검사서), 변호사의 접견기록, ○○ 경찰서 소속 전·의경들의 진술, 피해자 및 피진정인의 진술, 2회에 걸친 실지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2003년 1월 15일 오후부터 수사본부 수사감독관의 지시에 의해 경찰관 등 6명으로 이루어진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전담팀이 구성됐고,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를 전격 실시하는 과정에서 밤샘조사·가혹행위·기망에 의한 수사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피진정인들의 이 같은 행위는 헌법 제10조(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와 제12조(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며 형법 제125조(폭행, 가혹행위)의 범죄행위를 구성할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판단돼, 국가인권위는 수사관련자 7명을 검찰총장에 수사의뢰하기로 결정하였다.

4. 인권침해사례 발생 실태분석

먼저 형벌의 본질에 관하여 전통적 응보형에 의하면 범죄인이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경찰을 비롯해서 교도관, 검찰 등 모든 법집행 공직자(law enforcement officer)들이 은연중에 품고 있는 의식, 즉 죄인은 수사·구속·재판·복역 과정을 통틀어 모두 벌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범죄자의 인권침해는 범죄 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라는 통념을 말한다.

그러나 인권존중형 처벌론은 범죄자에 대한 합법적인 처벌에 대하여는 어느 사회에서나 정당하게 인정하나 죄인에게 합당한 처벌을 하고 교화의 기회를 주되 합법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활동에서 지켜지지 않는 이유로는

- 가. 일제시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관행과 권위주의적 조직문화가 아직도 온존하여 재생산되는 문제¹¹⁾
- 나. 적당한 규정이 없거나 절차가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불합리하거나 사문화되어 있는 경우
- 다. 적법절차와 온정주의와 혼동하는 경향¹²⁾

11) 이에 대해 유엔이나 국제엠네스티 등이 제시하는 법집행 공직자 행동강령은 상부의 명령보다 법집행 절차의 엄격한 준수를 강조하고 있다.

12) 법절차대로 하면 수사가 불가능하고 신사적으로 대해주면 고분고분하지 않는다는 의식을 근절해야 한다고 국가인권위는 주장하고 있다.

라. 경찰관은 자신이 직접 범죄인을 처벌하는 법의 대리집행인이라는 의식¹³⁾등이 있다.

5. 인권 보호 방안

가. 수사 및 구금

신체의 안전과 자유는 인권의 출발점으로 적법한 절차로만 제한될 수 있으므로 수사와 체포와 구금과정을 통해 반드시 강조되어야 할 인권은 '고문 받지 않을 권리'¹⁴⁾이다.

(1) 체포에 따른 피의자의 권리고지

법적 근거 없이 어느 누구도 체포해서는 안 되며, 체포할 경우 반드시 적법절차를 따라야 하며 체포 즉시 체포된 사람이 가족 및 변호인과 접촉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고 필요할 경우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해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체포 즉시 자신이 받는 처우에 대한 불만제기를 포함한 권리들에 대해 알려 주어야 하며 반드시 모든 체포된 자에게 가족이나 친지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릴 권리가 있음을 알려 주어야 하고 체포, 구금 장소, 이송 내지 석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대상자

13) 경찰관 등 법집행 공직자는 주어진 절차와 규정에 따라 사적이지 않게 법을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14) 관련 법령(헌법)은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 당하지 아니한다.(제12조 제2항)'와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제12조 제7항)'로 판례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관은 하관에 대하여 범죄행위 등 위법한 행위를 하도록 명령할 직권이 없고 하관은 소속 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는 있으나 그 명령이 참고인으로 소환된 사람에게 가혹행위를 가하라는 등과 같이 명백한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인 때에는 이미 직무상의 지시명령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설령 대공수사단 직원은 상관의 명령에 절대복종하여야 한다는 것이 불문율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고문행위 등이 금지되어 있는 우리의 국법질서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불문에 해당하거나 강요된 행위로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라 고는 볼 수 없다.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도2358판결)'이다.

의 친지나 관계인들이 알 수 있는 곳에 즉시 게시하여야 하며 피의자를 구금한 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친지 혹은 다른 관계인이 피구금자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긴급 체포

(가) 관련 법령

1) 형사소송법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제212조)

다만 5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 범죄의 경우에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않아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제214조)

현행범이 아닌 피의자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구속필요성, 그리고 지방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긴급성의 요건 등이 충족되는 것을 조건으로 긴급 체포할 수 있다. (제200조의 3)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 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 (제200조의 4)

긴급 체포 시에도 영장에 의한 체포와 마찬가지로 체포사유를 피의자에게 알려야 하며, 범죄사실의 요지와 변호인 선임권이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00조의 5)

2) 판례

현행범이나 준현행범이 아닌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법원의 영장 없

이) 피고인의 집에 강제로 들어가려고 하는 경찰관들을 제지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었으므로 공무집행 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시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도2395)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교통사고를 낸 차량이 도주하였다는 무전연락을 받고 주변을 수색하다가 범퍼 등의 파손상태로 보아 사고차량으로 인정되는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준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장물이나 범칙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에 해당한다. 형법 제136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 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됨. 그러나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고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연행하려 했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님. 또한 현행범이 연행거부의 방법으로 체포경찰관을 폭행해도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음. (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3) 인권 개선 방안

법률에 정한 요건에 부합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영장 없이 '긴급 체포를 행할 수 있으며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체포와 유치)는 철저히 관련 법규정에 따라야 하며 체포하는 경찰관은 반드시 법이 부여한 권한만을 행사하며 체포를 당하는 모든 사람에게 체포 즉시 그 사유를 알려 주며 체포시간, 체포사유, 유치장소에 대한 정확한 정보, 등을 반드시 기록하고, 그 기록은 반드시 유치된 당사자나 변호사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3) 불공정한 수사와 미흡한 인권보호

(가) 관련 법령

1) 경찰법

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

와 권리를 존중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2)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관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의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 있는 천재, 사변, 공작물의 손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광견, 기마류 등의 출현, 극단한 혼잡 기타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는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다.(제5조)

- ① 그 장소에 집합한 자, 사물의 관리자 기타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는 것
- ② 특히 긴급을 요할 때에는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자를 필요한 한도 내에서 억류하거나 피난시키는 것
- ③ 그 장소에 있는 자, 사물의 관리자 기타 관계인에게 위해 방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스스로 그 조치를 하는 것

(나) 판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는 형식상 경찰관에게 재량에 의한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였으며 경찰관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경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한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하게 된다. (대법원 1998. 8. 25. 선고 98다 16890)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하기 직전까지 오랜 기간에 걸쳐 원한을 품고 집요하게 피해자를 괴롭혀 왔고, 이후에도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계속 위해를 가할 것이 명백하여 피해자의 신변이 매우 위험한 상태에 있었다. 피해자가 살해되기 며칠 전 범죄신고와 함께 신변보호를 요청하고 가해자를 고소한 경우, 범죄신고와 함께 신변보호 요청을 받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나 고소장 접수에 따라 피해자를 조사한 지방경찰청 담당경찰관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아 수사를 신속히 진행했어야 한다.

이에 가해자의 소재를 파악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에 대한 범죄의 위험이 일상적인 수준으로 감소할 때까지 피해자의 신변을 특별히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다 11635)

(다) 인권 개선 방안

불공정한 수사를 막기 위해서는 법에 의한 공정한 법집행이 가장 중요하므로 조사를 받는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사건 발생시 가능한 모든 사람에 대한 조사를 하여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모든 사람이 어떤 사유로 도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심하여야 하고 특히 폭력과 협박의 위험에 처한 사람은 분명하고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어야 함과 동시에 어린이, 노인, 여성, 피난민, 가출인 및 사회적 소수 등 폭력과 협박의 피해에 노출될 우려가 큰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어야 함은 물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수사¹⁵⁾에 대한 인권보호 실천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

외국인 피의자의 경우 즉시 관계국의 영사 내지 외교 담당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 주며 모든 체포된 난민과 망명 신청자에게는 체포의 사유와 관계없이, 해당 지역의 유엔 난민고등 판무관실 대표자나 난민지원기관과 접촉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한편 피의사실 유포¹⁶⁾와 관련하여 경찰관은 수사 시 인지하게 되는

15) 관련 법령은 헌법 제11조 제1항 인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와 형사소송법의 제11조 제1항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16) 관련 법령은 헌법상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제27조 제4항)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제17조)',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21조 제4항)', 형법상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제126조)', 형사소송법상 '검사, 사법경찰관 기타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비밀을 엄수하며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제198조)' 이며 판례로는 담당검사가 피의자가 피의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보강수사를 하지 않은 채 참고인측의 불확실한 진술만을 근거로 마치 피의자의 범행이 확정된 듯한 표현을 사용하여 기자들에게 피의사실을 공표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 10215, 10222),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에 의하여 다수의견을 집약시켜 민주적 정치질서를 생성·유지시켜 나가는 것이므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의사항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의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받아야 한다. 하

피해자나 피의자에 대한 사항을 수사가 종결되어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때까지 발설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나 피의자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으며, 직무상의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 특히 피해자의 보호와 관련하여 경찰관은 그들의 안전과 사생활을 보호 해 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 경찰은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자 보호에 나서야 할 것이며, 특히 피해자들이 커다란 충격을 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명심하여 언행에 유의해야 한다.

(4) 경찰서 유치장 운영

(가) 관련 법령

1)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서 및 지방해양경찰관서에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체포·구속되거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또는 처분을 받은 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유치장을 둔다. (제9조)

2) 행형법

경찰관서에 설치된 장은 미결수용실에 준한다. (제68조)

3)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경찰훈령 제62호)

간수자는 근무 중 간단없이 유치장 내부를 순회하여 유치인의 동태를 살피되, 특히 다음 행위 등의 유무를 유의하여 관찰함으로써 사고방지에 노력해야 하며 특이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유치주무자에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만 그에 못지않게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등 사적 법익도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보호와 표현의 자유보장이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는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익을 비교해야 한다. 즉,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衡量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자살 또는 도주 기도행위
음주, 흡연, 도박 및 낙서행위
증범자나 먼저 입감된 자 또는 범죄경력 등을 내세워 같은 유치인을
괴롭히는 행위

언쟁, 소란, 잡담하거나 허가 없이 눕는 행위
건물, 감방 시설 내 비품, 대여품 등을 파손하는 행위
식사를 기피하거나 식사중 혼잡을 고의로 야기하거나 식사한 후 식
기, 수저 등을 은닉하는 행위

질병의 발생
지나치게 불안에 떨거나 비판 고민하는 자
유심히 간수자의 동태나 거동만을 살피는 행위
유치장 내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거나 물건이 유치장 내로 투입되
는 행위 (제19조 제2항)

(나) 판례

유치장의 시설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경찰서 유치장 화장실 사용
장제'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린바 있다. (22001.7.19.2000헌마546)

즉 경찰서 유치장 내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모습 등이 외부에 노출되
어 인격을 침해당했다는 요지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위헌청구를 받아들
인 것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유치장 화장실은 두 쪽 면이 바닥에서
74~79Cm 높이로 용변 볼 때 소리와 냄새가 밖으로 유출되고 동료 유
치인과 경찰관 등에게 허벅지 등이 노출될 수 있다며, 이 때문에 화장
실 사용자들이 수치심과 당혹감으로 생리적 욕구를 억제해야 하는 등
인격침해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유치장 내 화장실은
도주와 자해 등을 막기 위해 내부 관찰이 가능한 구조가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열악한 환경의 화장실 사용을 강요하는 것은 구금 목적의 합
리적 범위를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침해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 인권 개선 방안

1) 피구금자 수용

피구금자는 기결수와는 격리 수용되어야 하며, 가급적이면 거주지 혹
은 주 활동장소와 가까운 곳에 유치되어야 하고 모든 피구금자에게는
가급적이면 자신의 옷을 입히도록 하고 형사절차에 부합하는 한도 내에
서 책이나 신문 혹은 필기구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리를 받거나 살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2) 신체수색¹⁷⁾

체포 또는 구금된 모든 사람은 인간적인 대우를 받아야 하며 이와 관
련하여 신체수색의 경우 정밀신체검사의 요건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신체검사의 방법을 임의로 선택하는 일이 없어야 하고 특히 정밀신체검
사는 인격권 등 인권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시행한다.

나. 경비 활동 (집회·시위)

(1) 관련 법령

(가) 헌법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21조
제1항)

17)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 8조에는 '① 유치인 보호관은 피의자를 유치함에 있어 유치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유치장 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위험물의 은닉소지 여부
를 검사하되, 구속영장 발부자, 살인·강도·방화·마약류·조직폭력 등 죄질이 중한 사범, 반입금지물품
휴대 의심자 및 기타 자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의 경우에는 정밀신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그 이외의 피의자에 대하여는 주무 또는 당직간부의 판단에 따라 간이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유치인 보호관은 유치인에게 검사목적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며 검사로 인한 불필요한 고통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일이 없도록 배려하고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장소에서 가운을 입혀 신속하게 검
사하여야 한다. ④ 여성유치인의 신체검사는 성년의 여성근무자 또는 여의사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하
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이 선거법 위반사건으로 체포된 여성이라는
점 등에서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거의 없었음에도 경찰관이 알몸상태에서 앉았다
일어섰다는 반복하게 함으로써 청구인들에게 심한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었다. 이 같은 경찰서 유치장
내 정밀 신체수색은 수용자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수단과 방법으로 실시되는 경
우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헌재 전원재판부 2002.7.18.2000 헌마327)'라고 판시함.

(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집회,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질서 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 (제12조의 2 제2항)

(2) 판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8조,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2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집회 신고시간을 넘어 일몰시간 후에 집회 및 시위를 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경찰관이 참가자들에 대하여 상당한 시간 내에 자진해산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자진해산 요청에도 응하지 아니할 경우 자진해산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여기서 해산명령 이전에 자진해산할 것을 요청하도록 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자진해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요청할 필요는 없고, 그때 해산을 요청하는 언행 중에 스스로 해산하도록 청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된다.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2172)

헌법 제21조 제1항(모든 국민의 집회·결사의 자유) 및 제2항(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 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관할 경찰서장에 게 그에 관한 소정의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및 제8조 제1항(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미비한 점이 보완되지 않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음) 등에 비추어 집회신고의 취지는 신고를 받은 관할 경찰서장이 그 신고에 의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적법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보호하는 한편 그로 인한 공공의 안녕질서를 함께 유지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다. 또한 금지통고를 하는 경우에도 헌법에서 금하고 있는

사전허가가 되지 않도록 경찰서장이 집회의 실질적 내용에까지 들어가 그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 허부를 결정하여서는 안 된다.

(서울고법 1998. 12. 29. 선고 98누11290)

(3) 인권 개선 방안

경찰은 폭력적인 집회를 해산할 때에도 오직 필요 최소한의 물리력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반드시 절차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정도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 경찰장비 사용

(1) 관련 법령

(가) 경찰관집무집행법

경찰관은 현행범인의 경우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의 2)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찰장비에 대하여는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제1항)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형법에 규정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때 또는 다음의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여기서 무기란 보통 권총·소총·도검 등을 말하지만 대간첩·대테러작전 등 국가안전에 관련되는 작전을 수행할 때에는 개인화기 외에 공용화기도 포함된다.

(제10조의 4)

(나)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경찰장비는 통상의 용법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

같은 규정 제4조와 제5조는 영장집행 등 또는 자살방지 등에 따른 수갑·포승 또는 호송용 포승의 사용에서, 제6조는 불법집회 등에서의 경찰봉·호신용 경봉의 사용에서 이러한 비례성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경찰관이 경찰봉 또는 호신용 경봉을 사용하는 때에는 인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협을 최소화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7조)

경찰관은 14세 미만의 자 또는 임신부에 대하여 전자충격기 또는 전자방패를 사용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극침 발사장치가 있는 전자충격기를 사용하는 경우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전극침을 발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사람을 향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구두 또는 공포탄에 의한 사격으로 상대방에게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찰관을 급습하거나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야기하는 범행이 목전에 실행되고 있는 등 상황이 급박하여 특히 경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또는 인질·간첩 또 테러사건에 있어서 은밀히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때에는 경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권총 또는 소총을 사용하는 경우에 범죄와 무관한 다중의 생명·신체에 위협을 가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권총 또는 소총을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방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경찰관은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4세 미만의 자 또는 임신부에 대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2) 판례

무죄추정을 받는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그에게 구속의 사유가 있어 구속영장이 발부, 집행된 이상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특히 수사기관에서 구속된 피의자의 도주, 항거 등을 억제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한도 내에서 포승이나 수갑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도561)

무기 사용의 요건과 한계에 대하여 경찰관이 신호위반을 이유로 한 정지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던 차량에 탑승한 동승자를 추격하던 중 수차례에 걸쳐 경고하고 공포탄을 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주하자 실탄을 발사하여 사망케 한 경우, 위 총기 사용행위는 허용 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이다. (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다61470)

(3) 인권 개선 방안

경찰관은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총기 등 무기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총기 사용은 사망이나 중대한 부상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엄격하게 규제되어야 하는 '최후의 수단'임을 명심해야 하고 이를 실천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찰관들이 임무를 수행할 때 경찰 장비를 사용하기 전에 가능한 모든 비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하여야 한다.

IV. 맺음말

인권은 '인간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는 권리'를 말하며 어떤 경우에도 침해할 수 없는 권리를 말하며 그 특징으로 인권존중 의식, 보편적 개념으로서의 인권, 권리들 간의 충돌과 제한원칙이며 시민적·정치적 권리, 법적 권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에 국가기관의 인권침해와 관련해 접수된 상담은 경찰과 검찰 관련 건수가 전체의 57%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인권위 인권상담센터가 발간한 '2004 인권상담 사례집'에 따르면 올해 국가기관 인권침해의 경우 경찰과 관련한 것이 1164건으로 전체(2805건)의 41.5%를 차지했다.

특히 경찰은 국가인권위의 상담센터가 업무를 시작한 2000년 39.3%를 비롯해 2001년 47.9%, 2003년 38.3%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권침해와 관련한 상담은 '편파' '불공정 수사'에 관한 내용이 가장 많았고 폭행, 가혹행위, 과도한 총기와 장구 사용, 욕설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경찰의 권한은 공권력 행사를 위한 정당한 목적을 행사하는데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하는 적합성의 원칙, 공권력 행사는 최소한에 그쳐야 하는 최소 침해의 원칙,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엄격하게 따져 보아 후자가 클 때만 작동하여야 하는 균형의 원칙, 공권력은 절대 남용되어서는 안 되는 과잉금지 원칙을 감안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따라서 경찰의 권한 행사는 무엇보다 중요한 민주국가의 '실질적인 법치주의' 실현이라는 경찰의 과제를 완수하기 위하여 헌법에 규정된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사전에 인권존중의식의 함양, 법과 절차에 의한 공정한 임무 수행, 어린이·노인·여성·가출인 등 폭력과 협박에 노출될 우려가 큰 사람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활동 전개, 경찰관들이 시민을 제압하는 수행할 때 가능한 모든 비폭력적인 수단 사용,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경찰관들에 대한 인권 교육 강화를 통한 인권의식 함양으로 바람직한 수사권 조정을 통한 국민 인권 보장과 법치주의 확립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인권관련 용어해설

<거주·이전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라 함은 공권력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일시적으로 머물 체류지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거주지를 자유롭게 정하고 체류지와 거주지를 변경할 목적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거주·이전의 자유는 토지에 묶인 '농노로 상징되는 봉건시대를 탈피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초로서 1919년 바이마르 헌법에서 최초로 규정되었으며, 우리나라 헌법에는 1962년 제5차 개정헌법 때부터 도입되었다.

헌법 제14조는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여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세계인권선언 제13조는 제1항과 제2항에서 각각 국내에서의 거주·이전의 자유와 국외에서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과잉금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이라 함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국가작용의 한계를 명시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침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을 의미하며 그 어느 하나에라도 저촉이 되면 위헌이 된다는 헌법상의 원칙을 말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옹호와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통해 나라별로 자국의 인권상황을 반영한 효과적인 인권보호장치를 고안하게 되었다. 국제인권법을 국내에 적용하면서 국민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권보호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요구에 의해 탄생한 것이 각국의 국가인권기구이며, 우리나라는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기구로서 탄생하였다. 국가인권기구는 나라마다 형태와 기능이 조금씩 다르고 권한의 폭도 다르지만 국가인권기구의 존재 자체가 그 나라 인권상황이 한 단계 진전되었음을 공시하는 지표가 된다. 국가인권

기구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국가와 시민사회가 인권을 함께 추구해야 할 공동의 가치로 표방하는 것을 말해주는 때문이다.

<국경없는 의사회>

국경없는 의사회는 1968년 나이지리아 비아프라 내전에 파견된 프랑스 적십자사 소속 베르나르 쿠시네를 비롯한 의사와 언론인 12명이 1971년 파리에 모여 '중립·공평·자원'의 3대원칙과 '정치·경제·종교적 권력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기치아래 전쟁·기아·질병·자연재해 등으로 고통받는 세계 각 지역의 주민들을 구호하기 위하여 설립한 국제민간의료구호단체이다.

<국제엠네스티>

국제엠네스티는 특정정부, 정파, 이데올로기, 경제체제, 종교적 신념을 초월하여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세계최대의 순수 민간차원의 인권운동단체이다. 1961년 영국의 변호사 피터베넌슨이 5월 28일자 옵저버지에 '잊혀진 죄수들'이라는 기사를 실음으로써 시작된 'Amnesty61'에 기원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2년 최초로 인권운동을 시작한 후, 양심수석방, 고문 종식, 사형제도 폐지 등을 위한 국제적 인권연대운동을 전개하여 왔다.

<권리장전(1689)>

권리장전의 정식명칭은 'An Act Declaring the Rights and Liberties of the Subjects and Settling the Succession of the Crown'으로서 1689년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다시금 확인하여 영국헌정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법적 문서의 하나이다. 권리장전은 영국 국민과 의회가 스튜어트 왕가를 상대로 벌인 오랜 투쟁의 산물이다. 제임스 2세의 국외탈출로 인해 공석이 된 영국왕위는 오렌지 공 윌리엄과 그 아내 메리가 승계하였다. 권리장전은 윌리엄과 메리의 왕위승계에 대하여 의회가 조건으로 내건 '권리선언'의 조항들을 구체화한 것이었다.

<권리청원(1628)>

권리청원이란 1628년 영국하원에서 기초하여 그 해 6월 7일 찰스 1세의 승인을 얻은 국민의 인권에 관한 선언을 말한다. 1628년 에스파냐 등과의 대외전쟁 비용에 궁색해진 찰스1세가 의회를 소집하자 의회는 강제공채와 불법투옥 문제를 둘러싸고 왕과 대립을 하게 되었고 하원의원이었던 에드워드 코크 등이 중심이 되어 국왕에게 청원이라는 형식으로 권리선언을 한 것이 곧 권리청원이다.

<마그나카르타(1215)>

마그나 카르타, 즉 대헌장은 1215년 내란의 위협에 직면한 존왕이 반포한 인권헌장으로서 이후 1216년, 1217년, 1225년에 각각 개정되었다. 존왕의 실정에 견디지 못한 귀족들이 런던시민들의 지지를 얻어 왕과 대결하여 템스강변의 러니미드에서 왕에게 승인하도록 한 귀족조항을 기초로 작성되었다. 원문에는 개조번호가 없었으나 18세기 이래 63개조로 정리되어 있다. 새로운 요구를 내놓은 것은 없고 구래의 관습적인 모든 권리를 확인한 문서로서 교회의 자유, 봉건적 부담의 제한, 재판 및 법률, 도시 특권의 확인, 지방관리의 직권남용 방지, 사냥, 당면한 애로사항의 처리 등 여러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의 독립선언>

미국의 독립선언은 역사적으로 1776년 7월 4일 아메리카 합중국의 독립을 내외에 선언한 일을 의미하나, 토머스 제퍼슨이 기초한 독립선언서는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박탈할 수 없고 양도할 수 없는 천부인권을 선언한 역사적인 인권선언으로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이후의 프랑스 인권선언에 영향을 주었으며, 그 정신은 '권리장전', 즉 미국연방헌법 수정조항을 통해 구체화되어 전 세계 헌법의 기본권 규정의 모범이 되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권위주의시대를 극복하고 한국의 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한 투쟁의 과정에서

부도덕한 정권에 정면으로 대항한 정치적 양심수들에 대한 변론을 적극적으로 맡아 민주화운동을 뒷받침한 '인권변호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활동하던 인권 변호사들은 1968년 구로동맹파업사건을 공동 변론한 것을 계기로 '정의실천법조인회'를 결성하였다. 정법회는 1970년대에 정치적 사건을 변론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던 중·장년 변호사들과 1980년대에 노동사건 등으로 변론영역을 확대해가고 있던 소장 변호사들의 결합이었다. 이모임은 1987년 6월 민주화투쟁 무렵까지 권인숙, 박종철, 김근태씨 등에 대한 고문사건의 폭로와 변론을 담당하는 등 반독재 민주화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바이마르 헌법(1919)>

바이마르 헌법은 1919년 8월 11일에 제정된 독일공화국의 헌법을 말한다. 그 명칭은 바이마르에서 열린 국민의회에서 헌법이 제정된 데서 유래한다. 국민주권주의에 입각해 보통·평등·직접·비밀·비례대표 등의 원리에 의하여 의원내각제를 채택했지만, 직접 민주제적인 요소도 다소 인정하였다. 바이마르 헌법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독일에서 패전독일을 이끌었던 우파와 자본주의적 모순을 타파하려는 우파의 불안한 타협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19세기적 자유주의·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면서 20세기적 사회국가의 이념을 가미한 특색 있는 헌법이다. 이는 근대헌법상 처음으로 소유권의 사회성을 강조하고 인간다운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을 이상으로 하는 사회국가의 입장을 취한 점에서 20세기 현대 헌법의 전형이 되었다.

<배심제도>

배심제도는 시민과 직업 재판관에 의한 '분업재판'의 한 형태로서, 재판의 과정 중 사실문제에 관한 판단은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들이 맡고, 소송의 지휘, 증거의 취사선택, 법률의 해석 및 적용은 직업적 법관이 행하는 제도이다. 배심원제도는 일반시민에 의한 재판참여의 가장 고전적인 형태로서 고대 그리스시대부터 존재했으며 현재의 배심제도의 원형은 영구그이 배심제로서 1천년 가까운 역사를 지니고 있다. 그것이 근대에 와서는 미국·프랑스·스위

스·벨기에·노르웨이·덴마크·포르투갈·오스트리아·스페인 등 서구와 영미의 식민지였던 수많은 아시아·아프리카의 국가에서 정착되었다.

<버지니아 권리선언>

버지니아 권리장전으로도 언급되는 버지니아 권리선언은 버지니아 식민지 제헌회의에서 1776년 6월 12일 채택한 시민의 천부인권을 선언한 문서를 말한다. 버지니아 권리장전은 조지 메이슨이 주로 기초한 것으로서 자유시민의 제 권리에 대한 개인적 열망과 강시 버지니아 식민지 국민들의 이상을 담고 있다. 버지니아 의회는 메이슨의 초고에 약간의 수정을 가하고 두 조항을 추가하여 통과시켰는데, 그 중 신앙의 자유에 관한 조항은 패트릭 헨리의 제안이었다.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라 함은 사생활의 내용을 공개당하지 아니하고, 사생활의 형성과 전개를 방해당하지 않으며, 자신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관리·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사생활의 보호는 종래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의 문제로 이해되었으나, 1890년 미국의 워렌과 브랜다이스의 공동저술인 '프라이버시권'의 영향아래 정보사회의 진전에 따라 1965년 미국연방대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되었다. 세계인권선언도 제12조에서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생활, 가족,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그러한 간섭...에 대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라고 하여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받아야 하는 인권의 하나에 포함시키고 있다. 프랑스에서도 사생활 보호는 주로 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정립되어 왔으나 1970년 민법 제9조에 사생활보호 조항을 삽입하였고,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헌법적 권리로 인정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헌법은 제17조에서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을 보장하고 있다.

<사회권(생존권, 사회적기본권)>

인권의 역사에서 18~19세기가 자유주의의 시대라면, 20세기는 인간의 사회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시대라고 할 만큼 사회권적 기본권이 헌법에 보장된 것은 20세기의 성과이다. 사회권은 제1차 세계대전에 패배한 독일을 이끌었던 우파와 자본주의적 모순을 혁파하려는 좌파사이에 정치적 타협으로 성안된 1919년 바이마르 헌법에서 최초로 도입되었다. 20세기적 사회권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모순과 갈등이 심화되면서 등장하기 시작한 사회주의적 이념의 헌법적 수용으로 볼 수 있다. 그것은 곧 인간의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자유와 평등 이념의 실질적 조화에 초점이 모아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사회권의 보편화는 국제인권장전에 의해 초국가적 인권성을 인정받고 있다. 1948년 세계인권선언은 제22조 이하에서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제22조), 건강의 권리(제25조), 등을 명시하였다.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역시 광범위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생명권과 사형제도>

생명권은 모든 개별 기본권의 전제가 되는 가장 원초적인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생명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기본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한 것이기 때문이다. 현행 헌법은 독일헌법이나 일본헌법과 달리 생명권에 대한 명문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나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현행 헌법사의 생명권의 근거 규정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으나, 헌법 제10조의 인가의 존엄과 가치와 제12조 신체의 자유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세계인권선언>

1948년 6월 유엔인권위원회에 의하여 완성된 후, 몇 차례의 수정을 거쳐 1948년 12월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은 보편적인 국제기구에 의하여 주창된 최초의 포괄적인 인권문서이다. 세계인권선언은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협약을 만들어 회원국의 서명을 받는 일이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선언'이라는 형식을 취하였지만, 이 선언은 그것이 갖는 도덕성 및 법적·정치적 중요성 때문에 인류의 자유와 존엄성을 향한 투쟁의 역사적 이정표로 인정받아 왔으며, 채택된 후 50여년이 지난 오늘날 유엔이나 국제여

론, 국제 NGO 등에 의하여 사실상 선언상의 의무가 국제적으로 강제 되다시피 하고 있다.

<신체의 자유>

신체의 자유와 안전이라 함은, 법률과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신체의 안전성과 자율성을 제한 또는 침해당하지 않는 자유를 말하며, 일명 '인신의 자유'라고도 일컬어진다. 신체의 자유는 정신적 활동에 관한 자유와 더불어 인간의 시원적 요구인 동시에 인간존재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그러므로 신체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그 밖의 자유나 권리의 향유는 말할 것도 없고, 인간 존엄성의 유지와 민주주의 그 자체의 존립마저 불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신체의 자유는 근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자유라고 할 수 있으며, 인간이 자연법상 당연히 누리는 천부적·초국가적 자연권이다.

<알권리와 정보의 자유>

알권리라 함은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받아들이고, 받아들인 정보를 취사·선택하고, 의사형성·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권리이다. 알권리는 흔히 정보의 자유와 동일한 의미로 이해되고 있다. 알 권리의 정립은 바로 현대 정보사회의 진전에 따른 정보체계의 근본적인 변화와 맥락을 같이 한다. 일반적으로 알 권리는 정보전달체계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견지하여 온 표현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알 권리는 단순히 표현의 자유의 한 영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의 정보욕구를 충족시키고 이를 통하여 소극적인 지위에 머무르고 있던 국민이 주권자의 지위에서 적극적으로 정보전달체계에 직접 개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양심과 사상의 자유>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 제10조는 "어느 누구도 그 표현이 법률에 의하여 확립된 공공질서를 교란하지 않는 한, 그 의사가 방해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 인권선언의 제4조에 규정한 "자유란 타인을 해치지 않는 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있다”라는 자유의 원리를 구현할 것이라고 평가된다. 따라서 인권선언 제10조는 종교의 자유·사상의 자유뿐만 아니라 양심의 자유를 표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양심의 자유는 초기에는 종교의 자유와 함께 규정되기도 하였으나 오늘날 종교의 자유와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제헌헌법엔 양심의 자유는 종교의 자유와 같은 조문에 규정하였으나 1962년 제5차 개정헌법 이래 종교의 자유로부터 분리하고 있다. 현행 헌법은 제19조에서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양심의 자유를 정면으로 보장하고 있다.

<언론과 출판의 자유>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장은 근대 입헌주의의 시발을 의미하는 미국 독립혁명 및 프랑스혁명 이후에 출현한 입헌주의적 문서에서부터 이미 확인된 바 있다. 프랑스 인권선언은 제11조에서 “사상 및 의견의 자유로운 통신은 인간의 가장 귀중한 권리의 하나이다. 단 모든 시민은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만 이 자유의 남용에 대해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였고, 미국 연방수정헌법(권리장전) 제1조는 “미합중국의회는... 언론 또는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였다.

<예술의 자유>

현행 헌법은 제22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여 예술의 자유를 헌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예술의 자유는 미를 추구하는 자유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예술의 자유는 비교적 최근에 정립된 기본권이기 때문에 예술의 정확한 개념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다.

<유엔헌장>

1944년 8월에서 10월 사이에 미국 워싱턴 교외의 덤바턴오크스에서 열린 회의에서 미국·영국·소련·중국의 대표들은 ‘전반적 국제기구 설립에 관한 제안’에 합의하였고 이것이 유엔헌장의 원안이 되었다. 그 후 1945년 2월의 알타회

담을 거쳐 6월 26일 샌프란시스코에서 50개국이 서명함으로써 10월24일 유엔헌장이 발효되었다. 유엔헌장 제1조는 유엔의 목적으로서 국제평화 및 안전을 유지할 것, 여러 국가간의 우호관계를 발전시킬 것, 경제적·사회적·문화적·인도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국제협력을 달성할 것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지난 시대의 대규모적 인권유린에 대한 반성으로서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존중’을 유엔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혹은 인도주의적 국제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을 얻어내고, 인종·성별·언어 및 종교 등에 의한 차별대우 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존중하도록 장려하고 촉구하기 위해서 유엔을 설립한다.”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직접·간접적으로 공권력에 의하여 사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죽음의 진실을 규명할 목적으로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에 따라 2000년 10월 17일 출범하였다. 대통령 소속의 한시적 기구로서, 조직은 위원장 아래 2명의 상임위원과 사무국이 있다. 주요업무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접수된 의문사 관련 진정의 조사, 처리이다.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보고서팀을 운영한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근대 헌법의 기본원리로 전제되었던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20세기에 들어와서 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현실이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현실적인 문제로 부각되었다. 특히 산업혁명 이후에 심화된 빈부의 갈등과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통하여 인간에 의한 인간존엄성 말살의 극단적인 형태가 드러났고, 그 대표적인 예가 나치에 의한 유대인 학살이었다. 그 결과 인간존엄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절실하게 느끼고 있던 국가를 중심으로 20세기의 각국 헌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명문화되었다. 인간 존엄성이 절대적 불가침을 규정한 독일기본법 제1조가 대표적인 예이다. 현행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라고 규정하여 독일기본법의 예를 본받아 인간의 존엄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에서 규정한 이래 1980년 제8차 개정헌법에서 행복추구권을 추가하여 현행 헌법에 이르고 있다. 이는 기본권 보장의 일반원칙으로서 인간의 존엄이라는 윤리적 내지 자연법적 원리를 헌법 규범화한 것이다.

<인권>

인권이라 함은 단지 인간이라는 이유로 해서 누리는 기본적인 권리를 가리킨다. 이러한 인권의 개념은 자연법과 사회계약론에 기원을 두고 있는 것으로 1789년 프랑스혁명에서 채택된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중 '인간의 권리선언'은 자연법상의 인권개념을 실정법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즉 인권선언에서는 "인간 자연법상의 인권개념을 실정법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즉 인권선언에서는 "인간 자연적이고 양도불가능하고 신성불가침한 제 권리를 엄숙히 선언"(전문)하면서, "인간은 권리로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며 생존한다"(제1조), "인권보장과 권력분립이 되어 있지 아니한 나라는 헌법을 가졌다고 할 수 없다"(제16조)라고 천명하고 있다.

<인신보호법(1679)>

인신보호령, 인신보호율이라고도 번역되는 인신보호법은 부당한 구금에 따른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1679년에 제정된 영국의 법률을 뜻한다. 인신보호법이 제정되기 이전 영국에서는 개인이 공적 기관이나 사인에 의하여 이유없이 구금당하거나 장기간 구류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법원 또는 법관이 타인을 구속하고 있는 기관 또는 사인에게 피구금자의 신병을 재판소에 출두시켜 법원에 보이도록 문서로 명령하는 인신보호영장 제도가 있었다. 이 시기의 인신보호영장은 명백히 부당한 구금으로부터 신체의 자유를 보호하는 기능의 맹아를 보여주고 있으나, 국왕의 특별명령에 의한 구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17세기에 들어와 국왕과 의회의 대립항쟁의 과정을 거쳐 국왕의 전단적 체포·구금을 부정하는 인신보호법의 제정으로 이어졌다.

<자유>

인류의 역사는 자유를 향한 역사라 할 수 있을 정도로 항상 인간의 자유는 인간생활의 기본적인 요망사항이었다. 근대입헌주의 이전의 단계에서도 인간의 자유에 관한 많은 논의가 있었고, 그에 따라 일정한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영국의 권리청원, 인신보호령, 권리장전을 통한 일련의 자유권의 쟁취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천부·불가침적인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자유권은 자유주의·개인주의에 대한 근대자연법론의 사상적 영향 하에 미국의 독립선언과 프랑스의 인권선언을 통해서 헌법상 기본원리로 자리 잡았다. 그 이후에 탄생한 헌법에서는 자유권을 헌법상 권리로 규정하게에 이르렀고 그것은 곧 자연권으로서의 자유권의 실정권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난 2세기간에 펼쳐진 인류역사의 발전과정에서 자유권은 사회권이라는 새로운 권리의 전개에 따른 도전을 받기도 하였고, 특히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자행된 비인간적인 행태에 대한 반성적 성찰로서 자연법의 재생을 논의하게 되었다.

<종교의 자유>

사회질서를 형성·유지하는 데 있어서 각종 신념체계들이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모든 사회는 일정한 중추적 규범을 갖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역사적으로 가장 먼저 발달되었으며, 고대국가의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던 것은 종교규범 내지 종교적 신념이다. 종교는 인간의 정신과 육체를 포함한 인간의 모든 삶을 총체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특성을 갖는 신념체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종교적 신념의 특성인 절대성의 요구는 필연적으로 종료 상호간의 충돌로 이어지게 되고 종료간의 충돌은 타협하기 어렵다는 특성을 가지게 되어 종교의 자유의 보장에 장애물로 작용해 왔다. 근대 이후 합리주의가 인간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게 되면서 종료의 절대성에 대하여 일정한 한계를 설정하려는 노력이 성공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세속 질서 내에서는 종교적 신념의 절대성을 완화시키고 종교적 관용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중심으로 기본권으로서의 종료의 자유가 형성·발전되었다.

<주거의 자유>

주거의 자유라 함은 자신의 주거를 공권력이나 제3자로부터 침해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말한다. 주거의 자유는 개인에게 그의 자유로운 인격의 발현을 위하여 '기초적 생활 공간'을 보장해준다는 의미를 가진다. 즉 주거라는 독립된 사회적 공간에서 행해지는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이며, 따라서 정당한 주거권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는 주거하는 공간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간섭도 인정되지 아니함이 원칙이다. 헌법 제16조는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다"라고 하여 주거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 인권선언 제12조를 통해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집회와 결사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라 함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회합 또는 결합하는 자유를 말한다. 언론·출판의 자유가 개인적 자유의 성격을 가진 의사소통의 자유라면,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집단적 형태로 행해지는 의사소통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집회·결사의 자유를 언론·출판의 자유로 나타나는 일반적인 의사소통의 자유에 대하여 특별한 형태로 나타나는 의사소통의 자유로 볼 수 있다. 집회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는 이처럼 집단적 형태로 행해지는 의사소통의 자유의 행사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나, 그 본질과 성격에 있어 적지 않게 차이점도 나타난다. 따라서 집회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는 별개의 독립된 권리로 이해된다. 집회의 자유는 같은 의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곳에 모여서 그들의 의사를 보다 강력하게 표현하는 자유이다. 개인의 의사의 총화를 집단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그들의 의사표현이 갖는 비중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집회의 자유는, 제헌헌법 제13조가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이래 지속적으로 헌법전의 일부가 되어 왔다. 현행 헌법은 제21조에서 집회·결사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인정하고, 특히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다.

<차별>

차별은 차이에 제도적 가치를 부여하는 인위적 조치다. 차이란 글자 그대로 서로 다름을 의미하는 말로서 사람마다 다른 취향과 선호, 기질과 특색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다. 사람과 사람, 집단과 집단 사이에 문화와 생활양식의 차이가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런데 이 차이에 일정한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차별이 생겨난다. 차별은 불합리하고 자의적인 기준으로 인간의 차이를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기본적으로 평등한 인간집단에 대해 불평등한 대우나 사회적 통제·격리를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성 차이는 남성과 여성이 가진 신체적·정서적 차이를 뜻하는 것이지만, 성차별은 그러한 신체적·정서적 차이를 비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평가하여 직업선택이나 임금 등에 불평등한 처우를 하는 현상을 말한다. 역사적으로 한 사회의 지배 권력은 자신들의 지배체제를 유지, 강화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차별적인 제도를 이용하였다. 많은 나라의 경험에서 공동적으로 발견되는 대표적 차별 유형으로 인종차별, 성차별, 장애인차별 등이 있다.

<통신의 자유>

통신의 자유라 함은 개인이 자신의 의사나 정보를 편지, 전화, 전신 등의 통신수단에 의하여 전달하는 경우에 본인의 의사에 반해 그 내용, 당사자 등을 공개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말한다. 통신의 자유는 사생활 비밀의 자유와 더불어 넓은 의미의 사생활 보호에 속하면서, 동시에 현대적인 정보사회의 진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될 수밖에 없다. 현행 헌법은 제18조에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평등>

인간의 역사에서 평등은 항상 가장 기본적인 생활 속의 명제였다. 인간이 사회생활을 시작한 이래 평등의 실현은 곧 국가와 사회의 기본적인 과제였다. 그런 의미에서 근대입헌주의 헌법은 평등의 원리를 헌법상 최고의 원리로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평등권은 1776년 미국의 버지니아 권리장전을 통하여 최초로 헌법상 원리로 수용되었다. 1789년 군주주권시대의 종언을 고하고 국민주권시

대를 연 프랑스혁명의 구호는 자유·평등·박애였고, 1958년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 제1조와 제2조는 이를 프랑스의 국시로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근대입헌주의 시대에 주창되었던 평등의 원리는 자유의 원리와 갈등을 겪으면서 형식적인 평등에 머물고 말았다. 또한 산업 혁명의 성공과 더불어 자본주의 발전의 고도화에 따라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었다. 이에 국민의 실질적인 평등이 국가와 사회생활 속에서 구현되지 않고는 국가공동체 자체의 형성과 유지가 위태로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여기에 20세기 현대 복지국가 헌법에서는 국민의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일련의 법과 제도를 헌법의 틀 속으로 포섭하였고 그것은 특히 인간과 시민의 권리로서의 생존권적 기본권의 헌법화로 이어졌다.

<프랑스 인권선언 (1789)>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은 프랑스 혁명 당시 인간으로서 그리고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하여 입법의회가 공포한 선언을 말한다. 1789년 8월 20일부터 8월 26일 사이에 라파예트 등의 주도아래 열린 프랑스 국민의회가 채택한 이 선언의 17개 조항은 1791년에 제정된 헌법의 전문이 되었다. 이 선언은 또한 1793년 헌법과 1795년 헌법의 전문으로 승계되었다.

<학문의 자유>

학문의 자유라 함은 학문적 활동에 관항 공권력의 간섭이나 방해로 받지 아니하는 자유를 말한다. 인간은 자유로운 학문적 활동을 통해 지적으로 성숙할 수 있으며, 사회적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 그런데 학문 연구는 그 성질상 기존의 진리나 가치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거나 비판을 가함으로써 역사발전을 지향하기 때문에 지배체제로부터 박해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학문의 연구는 그 박해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끊임없이 발전시켜온 동력이기 때문에 사회발전을 위해서는 학문연구 활동을 국가권력이나 사회세력에 의한 간섭과 탄압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헌법 제2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학문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여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학문의 자유는 곧 진리탐구의 자유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제31조 제4항에서는 진리탐구의 잔당인 대학에 대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특별히 보장하고 있다.

<행복추구권>

행복추구권은 근대인권선언의 초기에 주장되었던 기본권들 중의 하나로서 실정화라는 측면에서 ‘인간의 존엄’과 연륜이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초기의 인권선언들과는 달리 현대 헌법에서는 찾아보기 쉽지 않은 기본권이기도 하다. 행복추구권에 대한 규정은 초기 근대 인권선언에서 발견된다. 예컨대 1776년의 버지니아 권리장전은 제1조에서 “행복과 안녕을 추구하고 획득하는 수단을 수반해서 생명과 자유를 향유하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었으며 같은 해의 미국독립선언에서도 “생명, 자유 및 행복을 추구하고 권리”를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복추구권의 규정은 현대로 넘어오면서 점차 찾기 어렵게 되었으며, 20세기의 예로서는 1947년 일본 헌법 제13조에서 “생명·자유 및 행복추구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선언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형사보상청구권>

헌법 제28조는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형사피의자와 형사피고인의 형사보상 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형사보상청구권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구금되었던 자가 자신의 구금이 법적 근거가 없음이 확인 되었을 때, 자신의 기본권침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권이다. 따라서 형사보상청구권은 사법절차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2004.12
 경찰인권교육방법, 국가인권위원회, 2003.12
 인권경찰 혁신의 시작입니다, 경찰청, 2005.5
 인권길라잡이(경찰편), 국가인권위원회, 2002.12
 연간보고서 2004, 국가인권위원회, 제1집, 2004.11
 연간보고서 2003, 국가인권위원회, 제1집, 2003.11
 행정과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2003.12
 헌법학개론, 김철수, 박영사, 2002.3.25

◆ 편집위원 ◆

위원장	총경	정인식
위원	경정	황현락
위원	경감	강윤식
위원	경위	이윤정
위원	경위	신창현

경찰관 인권교육교재

人權의 理解

2005年 6月 日 印刷
 2005年 6月 日 發行

發行處 : 警察綜合學校
 發行人 : 韓正甲
 印刷 : 三陽企劃
 電話 : (032)572-2165

<非賣品>

※ 本書의 無斷·複製를 禁합니다.